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8. 13 선고 2021가단2499 판결 [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1. 7. 9.

판 결 선 고 2021. 8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42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5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전선주

별지